

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명령서

소유자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상호(명칭)	
	주소 (전화번호:)	
사업장 소재지 (전화번호:)		
위반 사항	일시	
	장소	
	내용	
사용정지 기간 . . . ~ . . . (일간)		

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43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령합니다.

※ 위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해양경찰서장
시장·군수·구청장

